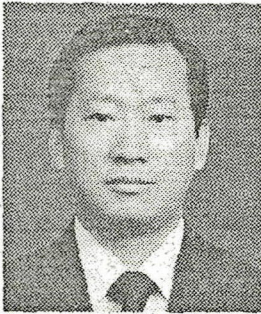


12세의 국민학교 여학생까지
종교위반으로 끌려간 일제의
만행이 지나치게 박해하면서
인간이 그 형제
악할 수 있다는
생각해보게 한
다. 그전까
인의 인간 정
가 조종으로
그런 만행을 저
실었다. 그 것이
노저의 '정신할
수 없다'였다.

柳 炳 華



韓日간의 인권의 불평등한
사구 전쟁한 한일관계 정립
이해신도 철저히 구명하고
인권을 추궁해야 한다. 그들
한글정부가 1965년 한
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
0 조약에서 양국의 재산
청구권 문제를 평등하고

적당한 점에 다른 문제다. 일
본 수상도 이러한 배상청구권
을 인정하는 데와 한일정부가
가만히 있는 것만 다를 뿐이다.
특히 제2차대전 발기인 19
44년 이후 일본에 이주한 한
국인이 1백50만명이 넘고 이
중 대부분이 정신대 강제징용
등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

동아 1992. 1. 23

挺身隊배상 法的근거

다른 사실만 보아도 이 문제의
심각성을 알 수 있다.

청구권 문제와 별개

일본정부가 배상청구권을 규명
한 국제법적 근거가 매우 분
명하다. 우선 일본정부가 19
05년 한일 간 배상청구권 개략적
0 조약에 합의하고 국외징역에 처

결하면서 본격화된 침략행위가
불법행위로 되었는데 196
5년 한일기본관계 조약 2조
에서 인정하고 있다. 또한 일
본정부가 종군위안부나 징용
자를 강제로 잡아간 사실이
불법행위인 일본 정부도 인
정하고 있다. 그러므로 이들은
二重의 不法行爲의 희생자들이

다.

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
들을 대부분인 재일동포들이
일본에서의 국외인 대우를 받고
있는 점이다. 일본정부가 연합
국과 일본의 강제주악인 선
프란시스코 조약 2조에서 일
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
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는
조항을 정중하게 해석하여 강

제로 일본의 불법과 사실상 일
본사회의 원인을에게 일본
국적 상실을 종용하여 국외인
대우하러 불법행위의 배상
책임을 일본에게 주는 배상
나 보강도 외국인에게는 근거
법규가 없다고 주지 않았다. 그
러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
본간의 강화조약이나 다른 법

왔는가. 근거가 없다면 특별법
을 제정하면 된다. 국제법인을
제하하는데 국내법의 근거가
없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말이
다.

첫째,挺身隊 문제가 대두되
었다고 해서 정신대문제만 다
루면 또 다시 불평등한 해결이
된다. 그러므로 정신대를 포함
일본정부가 강제 징용자로
혹사한 모든 사람들의 불법
희생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체계
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. 반
하여 말하지만 1965년 한
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

정확한 것은 韓日정
부간의 청구권을 중결한 것
이지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
청구권까지 중결한 것은 아
니다.

한글정부는 늦었지만 이문
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필요
가 있으며 몇가지 방향을 제시
하고 싶다.

첫째,挺身隊 문제가 대두되
었다고 해서 정신대문제만 다
루면 또 다시 불평등한 해결이
된다. 그러므로 정신대를 포함
일본정부가 강제 징용자로
혹사한 모든 사람들의 불법
희생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체계
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. 반
하여 말하지만 1965년 한
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

첫째,일본 정부는 이인한문
제를 근본적 포괄적으로 해
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
이 필요하다. 불법 배상 제정
없이도 불법행위가 자명한 정

를 제, 재일동포의 문제도 일
본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
구한 방식이므로 해결해야지, 그
지위를 박탈한채 외국인으로
다루면서 지연적인 지무달인이
나 외국인 등록제도를 가
한 것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
고 비효율적이다. 그러므로 일본
정부에 의하여 강제된 불법의
사실상 사회구성원으로 강요되
었으면서도 동시의 외국인으로
대우를 받는 가장 큰 희생자
다.

제인교포도 희생자

현정에서 중결한 것은 韓日정
부간의 청구권을 중결한 것
이지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
청구권까지 중결한 것은 아
니다.

全南 木浦 安西 48 日 韓日正
全南 木浦 安西 48 日 韓日正